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목 차>

1.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양지우
	담당부서 (과)	자원재활용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고응		연락처	044-201-7382
	과장	전원혁		이메일	y4ngjiwoo@korea.kr

2026. 07. 2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김고응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 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규제조문	제 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3.위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7.28~2026.09.0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료 · 생수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26년 10%)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 확대로 품질 · 신뢰성 개선소요 증대 ○ PET에 알루미늄이 접합되어 재활용과정 혼입 시 선별 · 제거가 어려운 “PET캔*”의 사용 제한 필요성 제기 * 캔시머(seamer)를 통해 PET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을 이중권체 결합																	
	7.규제내용	○ PET 용기를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금속과 결합한 포장재 사용 금지(안 제3조제5항 신설) * 공정회(7.1)에서의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 유예('28.1.1.~)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커피전문점 중 PET캔 사용매장</td><td>1.1만개소</td></tr><tr><td>이해관계자</td><td>PET캔 제조/수입자</td><td>5개소</td></tr><tr><td>피규제자</td><td>기타 식음료제조사 중 PET캔 사용업체</td><td>5개소</td></tr><tr><td>이해관계자</td><td>PET병 재활용업체</td><td>3개소</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커피전문점 중 PET캔 사용매장	1.1만개소	이해관계자	PET캔 제조/수입자	5개소	피규제자	기타 식음료제조사 중 PET캔 사용업체	5개소	이해관계자	PET병 재활용업체	3개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커피전문점 중 PET캔 사용매장	1.1만개소																
이해관계자	PET캔 제조/수입자	5개소																	
피규제자	기타 식음료제조사 중 PET캔 사용업체	5개소																	
이해관계자	PET병 재활용업체	3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PET 재활용공정에서 선별이 곤란한 금속의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0802.99		60802.99														
		피규제자 이외		59424.39	-59424.39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 PET와 금속을 결합하는 재질에 한해 금지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규제)를 적용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적용	60802.99	8029.99
	15.규제정비 계획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5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조자등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서로 분리(금속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몸체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하기 어렵도록 결합(접합 또는 부착 등을 말한다)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음료·생수용 PET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26년 10%)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 수요 확대로 품질·신뢰성 개선소요 증대
- PET에 알루미늄이 접합되어 재활용과정 혼입 시 선별·제거가 어려운 “PET캔*”의 사용 제한 필요성 제기

* 캔시머(seamer)를 통해 PET 몸체와 알루미늄 뚜껑을 이중권체 결합

- PET캔의 사용으로 인해 △용기로 재활용하기 위한 PET 재생원료 생산자의 제품 품질 저하, △음료용 제병업체에의 공급망 안정성 저해, △적정재활용되지 못하여 최종처분(소각·매립)됨에 따른 환경 영향 등 음(-)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바, 정부개입 필수적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PET캔 사용 허용
	내용	별도 규제 없이 현행과 같이 PET와 금속을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허용
규제대안1	대안명	PET캔 사용 금지
	내용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카페업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	○ 재활용업계의 비용구조를 왜곡하고, 이에 따라 재생원료의 최종수요자(식

		음료업계)를 위한 공급규모 축소 ○ 이물질이 혼입된 PET 재생원료는 사용이 불가능해 소각·매립되어 이에 따른 환경부하 증가
규제대안1	○ PET캔 사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축 ○ PET 소각·매립량을 감축하여 탄소발생을 억제하고, 국가 자원순환체계 신뢰성 제고	○ 카페업계의 PET캔 사용이 제한되므로, 대안용기 사용 필요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캔시머 사용 카페업계	○ '26.7.1., 서울역 근처 공청회 개최	○ 재활용 공정이 복잡하다고 규제하기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요청	○ 비중분리, 광학선별 등 기술적·재정적 해결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구조의 특성상 시장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비용수준의 대안옵션이 없음 ○ 기능상 차이가 없는 대체재가 존재하므로 대체재 사용 요청
PET캔 제조업계		○ 27년 규제 개시 촉박, 법제화 타이밍 조절 필요 ○ 향후 투자 계획 안정성 위한 정책 일관성 요구	○ 부칙을 통한 유예기간 부여('28.1.1. 시행)
PET 재활용업계		○ 캔시머 용기가 100개 중 1개만 혼입되더라도 전체 벌크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규제 시행 추진

시민단체		○ 호주 등 '최악의 포장재 설문조사' 등에서 PET캔이 1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 필요성 가속	○ 규제 시행 추진
------	--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유지안은 카페업계의 경영상 자율성과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극미량의 알루미늄 혼입만으로도 PET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 △현재 가용기술만으로 PET캔 등에 접합된 미량의 알루미늄을 선별하기 곤란하다는 점, △PET 재생원료가 주로 식품용으로 사용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점, △EU 등에서 수입제품 포장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여 통상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제대안1을 선택

3. 규제목표

- PET와 금속을 분리가 어렵도록 결합한 용기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PET 재생원료의 생산수율을 제고하고 단순처분량을 저감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PET 재생원료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
- (수단) PET에 금속을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PET캔과 같은 재질의 사용을 금지
- (비례성 검토) △손으로 분리가능한 캡(cap)형 용기 등 대안적 용기가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 △기존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등 유사입법과 규제범위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수단 간 비례관계가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PET 재활용체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O	사용금지되는 경우(PET와 금속을 결합)를 구체적으로 열거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서 △포장재 중 재활용체계 내 규모적 재활용(recycled at scale) 가능한 중량비율이 70%이상일 것, △포장의 모든 구성요소가 기능상 반드시 필요할 것을 요구(시행 '30.1.1.~)
- ※ PET캔은 재활용체계에 혼입 시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원료의 단위(벌크)를 모두 폐기해야 하므로, 규모적 재활용이 불가능(0%)한 포장재로서 사용금지 대상으로 판단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재활용이 낮은 금속 복합 PET에 대해 환경부담금 차등 부과(최대 500% 가산)
- (일본) PET병 자율규약(생산자단체)을 통해 금속 부속품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 중으로, 주요 유통체인·프랜차이즈 입점 차단

○ 타법사례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에 따라 폴리염화비닐(PVC), 유색PET 등 특정 재질에 대한 사용을 금지 중임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PET캔 사용 금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0,802.99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8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PET캔 사용 금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0,802.99		60,802.9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59,424.39	-59,424.39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0,802.99	59,424.39	1,378.6
기업순비용	60,802.99	연간균등순비용	8,029.99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대체 가능성 및 비용 부담 극복)** 커피 전문점 등 카페업계의 경우 기능상 차이가 없으면서 분리가 용이한 대안 용기(손으로 분리 가능한 캡형 용기 등)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유통·판매되고 있으므로 규제 이행에 따른 사업 전환 및 대체 용기 수급이 용이함
-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공청회('26.7.1.)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시행일을 2028.1.1.로 유예함. 이를 통해 업계가 설비 전환, 기존 재고 소진, 대안 용기 도입 등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명확한 규제 기준 설정)** PET 용기와 금속이 별도의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되지 않는 형태(PET캔)를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 및 지도 점검 시 직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이 가능함
- **(기존 지도·점검 체계 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포장규칙」에 따른 지자체의 포장재질·포장방법 점검 및 지도·단속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인력 증원이나 지도 점검상의 혼선 없이 행정적 집행이 충분히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재정 불요)** 본 규제는 PET와 금속의 불리한 결합 재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이나 재정적 지원 사업을 수반하지 않음

- (재정적 집행 가능성) 기존 지자체의 지도·단속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매우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26. 3. 4. 커피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서울역 인근)
 -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커피업계 관계자,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12명 참석
- 2026. 4.~6. 캔시머 사용 카페 현장조사(기후부, 환경공단)
- 2026. 7.1.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청회 개최(서울역 인근)
 - 카페·캔시머 업계, 학계, 시민단체, 재활용업계등 41명 참석

2. 향후 평가계획

- (PET 재생원료 품질 및 수율 모니터링) 규제 시행('28.1.1.) 이후 PET 재활용업계의 알루미늄 혼입비율 감소 여부 및 식품용 PET 재생원료의 생산 수율·품질 개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시행 실태 및 준수율 점검) 지자체와 협력하여 카페 등 사업장의 대안 용기 전환 실태 및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계도·점검 현황 관리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조제5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규제신설의 타당성) 음료·생수용 PET병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26년부터 10%)에 따라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재활용 공정에서 선별 및 제거가 곤란한 PET캔의 사용 제한은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비용 대비 편익의 우수성)** 대안 용기(캡형 등)가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등 대체재 활용이 가능하며, 극미량의 알루미늄 혼입으로 인한 전체 벌크 폐기 및 소각·매립 등 불필요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차단할 수 있음
- **(이해관계 수용성 확보)**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2028년 1월 1일까지 충분한 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8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PET캔 사용 금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0,802.99		60,802.9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59,424.39	-59,424.39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0,802.99	59,424.39	1,378.6
기업순비용		60,802.99	연간균등순비용	8,029.9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PET캔 사용 금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커피전문점
활동제목	PET캔의 타재질 대체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60,802,992,30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text{대체재질 단가} - \text{규제재질 단가})(\text{원}) \times (\text{매장당 일평균 판매량} \times 365\text{일}) \times \text{피규제매장 수}$ $((370 - 330) * (50 * 365) * 11000)$
근거설명	☐ 비용 개요 ○ 재질대체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비용을 분석 ○ 기존 PET캔의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 보틀형 PET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초과비용을 반영 ☐ 기본 가정 ○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업계는 PET캔 대신 그 기능과 단가가 가장 유사한 스크류캡(돌림뚜껑)형 PET 보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 규제재질과 대체재질의 단가는 한국환경공단이 주요 대체품 공급업자(인터넷 오픈마켓, 소상공인용 공동구매 플랫폼 등)을 통해 취합('26.5)한 평균가격수준을 적용 ○ 피규제매장의 수는 한국환경공단이 주요 PET캔 공급업체의 홍보자료를 통해 도출한 점유율, 판매량 자료를 역산하여 산출('26.6) ☐ 물량 및 단가의 산출 — (대체재질 단가) PP재질의 스크류캡(screw cap) 기준 370원/개

	- (규제재질 단가) 현재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시밍 캡(seaming cap) 기준 330원/개 - (매장당 일평균 판매량) 50개/일 - (피규제매장 수) 1.1만개 □ 추가 부담액: 매년 8,030,000,000원으로 예상 ○ 산출과정: 8,030,000,000원 = (대체재질 단가-규제재질 단가)(원) × (매장당 일평균 판매량 × 365일) × 피규제매장 수 = (370-330) × (50 × 365) × 11,000
--	--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재활용업체
활동제 목	재활용업체의 PET캔 선별/처리 절감
편익항목	재활용업체의 PET캔 선별/처리비용 절감분
편익	12,216,959,73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매입단가(d) × 재활용업체로의 PET캔 반입량 (B)(547000*715.1) 처리단가(p) × 재활용업체로의 PET캔 반입량 (B)(117000*715.1) 최저임금(원/인/년)(w) × 업체수(25882560*20) 처리단가(p) × 폐기물선별업체로의 PET캔 반입량= 처리단가 × (PET캔 전체 사용량(A) - 폐기물선별업체에서 선별되지 못하고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양(B))(117000*(6022.5-715.1))
근거설명	□ 비용 개요 ○ PET캔은 PET 재활용공정에 혼입될 경우 혼입물량단위(벌크) 품질이 저하되어 벌크 전체를 폐기하여야 함 ○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PET캔과 적정재활용 가능한 PET를 선별할 수 없어, 폐기물을 선별하는 업체와 재활용하는 업체는 인력을 투입하여 선별해낸 후 별도 비용을 들

여 폐기하고 있음

□ 기본 가정

- 가정/사업장에서 사용된 PET캔(A)은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배출되어 선별업체로 반입됨
- 선별업체은 PET캔을 선별해내고, 그 중 일부(B)는 선별 업체에서 선별되지 못하고 재활용업체로 반입됨
- 재활용업체는 B를 선별/처리하기 위한 인력을 업체당 1명씩 전담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물량 및 단가의 산출

$$\begin{aligned} & \text{○ PET캔 총 배출량(A)(톤) = PET캔 사용량(톤)} \\ & = (\text{매장당 일평균 판매량} \times 365\text{일}) \times 30\text{g} \times \text{피규제매장 수} \\ & = (50 \times 365\text{일}) \times 0.00003\text{톤} \times 11,000 \\ & = 6,022.5(\text{톤})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 재활용업체로의 PET캔 반입량 (B)(톤)} \\ & = (2026\text{년 재활용업체 PET(이물질 포함) 매입량}) \times (\text{PET캔 혼입률}) \\ & = 325,052(\text{톤}) \times 0.22\%^* \\ & = 715.1(\text{톤}) \end{aligned}$$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체조사('26.8, PET 재활용사 20개 중 조사에 응한 11개 업체대상)

$$\begin{aligned} & \text{○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가 선별해낸 PET캔의 처리(소각·매립)단가(p)(원/톤)} \\ & = 117,000\text{원}^* \end{aligned}$$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의 '25년 1년간 폐기물처리단가를 업체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 최저임금(w)(원/인/년) = 25,882,560원* * '26년 10,320원/시간 기준, 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재활용업체의 PET(이물질 포함) 매입단가(d) = 547,000원*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의 '25년 1년간 PET 음료병 매입단가를 업체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 ○ 재활용업체의 수 = 20개* *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26.8 기준 PET 취급 회원사 수 □ 추가편익: 매년 1,613,443,400원으로 예상 ○ 산출과정: 1,613,443,400원 = (재활용업체의 PET캔 매입비용 감축분) + (재활용업체의 PET캔 폐기물처리비용 감축분) + (재활용업체의 PET캔 선별비용 감축분) + (폐기물선별업체의 PET캔 처리비용 감축분) = (d × B) + (p × B) + (w × 20) + [p × (A-B)]. = (547000 × 715.1) + (117000 × 715.1) + (25,882,560 × 20) + [117000 × (6022.5-715,1)
--	---

(정량)영향집단명	재활용업체
활동제목	PET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제품(PET플레이크) 판매
편익항목	PET플레이크의 판매대금
편익	47,207,443,22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재생PET 플레이크 판매단가(원/kg) × 대체재질 사용량 (=A)(1035200*6022.5)
근거설명	

	□ 편익 개요 ○ 재질대체를 통해 재활용업체가 단순폐기하였던 PET캔 물량이 재활용가능한 PET로 대체됨에 따라 PET 재생원료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을 반영 □ 기본 가정 ○ PET캔은 모두 기능, 성상, 단가가 가장 유사한 대체재인 스크류캡형 PET보틀로 대체된다고 가정하여, 현재 PET캔의 사용량과 동일한 양의 보틀이 폐기되어 재활용된다고 가정 ○ PET의 가격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른 '무색 PET flake'의 1년간 평균가격('25.8~'26.7)을 적용 □ 물량 및 단가의 산출 ○ PET보틀 총 재활용량(톤) = 기존 PET캔 사용량(A)(톤) = 6,022.5(톤) ○ 무색 재생PET Flake 단가(원/kg) = 1,035.2(원/kg) = 1,035,200(원/톤) □ 추가편익: 매년 6,234,492,000원으로 예상 ○ 산출과정: 6,234,492,000원 = (PET보틀 재활용량)(톤) × (단가)(원/톤) = 6,022.5 × 1,035,200
--	--